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533호
2. 발 의 자 : 문 성 호 의원
3. 발의일자 : 2024년 2월 1일
4.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II. 제안이유

- 장래 희망 직업이 없다고 밝힌 학생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전보다 더 늘어났다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음 (2019년에 비해 초등학생은 12.8%에서 19.3%로, 중학생은 28.1%에서 38.2%로, 고교생은 20.5%에서 27.2%로 큰 폭 증가 함).
- 비대면 수업의 영향과 진로 체험 활동 등을 하지 못한 세대의 영향이 존재한다는 가설 아래, 전통적으로 희망 직업 순위가 높았던 직업군이 하위로 내려가고, 새로운 직업이 희망 직업 순위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변화의 시기임을 감안해야 함. 한정된 직업군 내에서 진로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재 교육 현장을 개선해야 함.

Ⅲ. 주요내용

- 교육감의 책무로 학생 진로 개발을 위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을 명시함(안 제3조)
- 센터 업무에 있어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직무·직군 등 연구 및 분석 업무를 추가함(안 제10조)

Ⅳ. 관련법령

1. 관계법령 : 「진로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청소년 기본법」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입법예고 : 2024. 2. 14. ~ 2. 18.(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1일 문성호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533호로 발의되어 2024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진로체험 활동이 위축된 교육 현장에서 학생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의 업무로 진로체험관련 연구 및 분석업무를 포함시키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현행 「진로교육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¹⁾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지도록 하며, 제4항에서는 진로교육이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²⁾

1) 「진로교육법」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년)」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빠르게 변하는 미래 직업환경에 대비하여 학교 진로교육을 내실화하고 진로체험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³⁾

○ 그러나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3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⁴⁾를 살펴보면, 초·중학생의 진로체험·상담의 참여현황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고등학생은 소폭 하락하였으며 진로체험 만족도 점수에서도 초등 및 고등에서 진로체험 점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체험이나 상담 방식이 학생들의 진로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기에 어려운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형 중심의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표-1] 학교 진로체험 및 상담 참여 현황 및 만족도(2020, 2022, 2023년)

(단위: %, 점)

구 분		참여 현황			만족도					
		2020	2022	2023	2020		2022		2023	
진로체험	초등학생	65.5	62.6	73.3	4.07	(0.85)	4.35	(0.83)	4.24	(0.91)
	중학생	82.2	75.6	81.5	3.88	(0.89)	3.84	(0.98)	3.86	(1.00)
	고등학생	67.2	69.3	69.4	3.86	(0.90)	3.81	(0.98)	3.79	(1.03)
진로상담	초등학생	36.7	34.8	41.6	3.98	(0.87)	3.92	(0.87)	3.98	(0.94)
	중학생	59.5	57.5	59.7	3.86	(0.92)	3.80	(0.98)	3.82	(1.04)
	고등학생	64.7	65.8	64.1	3.87	(0.87)	3.82	(0.98)	3.70	(1.05)

※ 출처: 교육부

주 1) 만족도는 '학교 진로활동별 참여 현황'에 '예'라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함.

2) 비율, 평균, 표준편차에 가중치 적용함.

3)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교육부, 2023.5.1.

4) '2023년 학생 희망직업 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2023.11.24.), 15면 참조

[표-2]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 및 도움 정도(중·고등학생)

(단위: %, 점)

진로체험 유형	중학생			고등학생		
	참여 현황	도움 정도	향후 참여희망	참여 현황	도움 정도	향후 참여희망
강연형·대화형	64.7	3.69 (0.98)	14.5	67.2	3.68 (0.91)	17.8
현장견학형	39.2	3.92 (0.95)	48.6	31.0	3.99 (0.89)	47.5
직업실무체험형 (모의직업체험)	37.6	3.91 (0.94)	18.0	27.9	4.02 (0.86)	19.8
현장직업체험형 (실제직업체험)	34.3	4.01 (0.95)	58.9	23.6	4.08 (0.89)	59.3
학과체험형	38.2	3.93 (0.97)	26.7	42.3	3.94 (0.90)	30.4
진로캠프형	28.3	3.96 (0.97)	22.0	30.1	3.94 (0.86)	16.9

※ 출처: 교육부

- 주 1) 도움 정도는 '진로체험 유형별 참여 현황'에 '예'라고 응답한 대상으로 조사함.
 2) '향후 참여 희망'은 중복 응답이 이루어진 문항이며, 비율은 전체 응답 인원 대비 각 항목별 응답 빈도로 계산함.
 3) 비율, 평균, 표준편차에 가중치 적용함.
 4) 괄호 안의 값은 표준편차임.

○ 이런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대전환, 포스트 코로나19 및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노력을 교육감의 책무로 하여 센터의 업무에 법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과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제3항)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제3항은 교육감에게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기르기 위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진로교육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감의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의무를 동 조례의 책무로 규정한 것 인바, 상위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동 조례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진로교육센터의 업무(안 제10조제5호)에 대한 검토

- 안 제10조제5호는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업무에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직무·직군 등 연구 및 분석 업무’ 를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의 상위법인 「진로교육법」 에 따르면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컨텐츠 개발·보급 및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⁵⁾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여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진로교육법」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진로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교육감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진로체험 및 진로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희망 직업에 대한 직무·직군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직업 현황 및 전망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발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⁶⁾ 이러한 직무·직군에 대한 연구·분석은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⁷⁾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서울시 내 직업군을 조사·파악하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입법조치로 생각되나,

동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한 ‘직무·직군 등 연구 및 분석의 업무’의 경우 각 자치단체별로 규정하기 보다는 전국적·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국가차원의 사무로 볼 수 있는 바, 사무의 특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10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직군 등의 연구 및 분석은 현재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업무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직업

6)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제40조(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

7) 고용노동부는 1999년부터 직업의 세부정보와 향후 일자리 전망 등을 수록한 「한국직업전망」을 발간해오고 있음.

현황과 전망’ 및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를 발표하고 있어 국가수준의 사무와 중복되므로 교육청 차원에서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처를 발굴하는 업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917, 2024.2.16.).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이현주(2180-8272)
----------	----------------	-------	----------------